

[별표 4] <개정 2008.1.3>

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(제47조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
  - 가.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나.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(糞原性)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
  - 다.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
  - 라. 탁도가 1 NTU(Nephelometric Turbidity Unit)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  - 마. 탁도가 5 NTU를 초과하는 경우
  - 바.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.1mg/L(결합잔류염소의 경우에는 0.4mg/L)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  - 사. 잔류염소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/L 이상인 경우
  - 아.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 미만인 경우로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  - 자. pH가 5.5 미만이거나 9.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
  - 차.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10mg/L를 초과하는 경우
  - 카. 그 밖에 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